

# 2025 학교 교육 계획서 중 -

## 2024학년도 교육실적 및 2025학년도 추진방향(안)

2024 년도 교육실적 및 2025 년도 추진방향	
방 과 후 복 지 부	○초, 중등교육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방과 후 활동 편성 운영 ○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○교육복지 대상자 선정 및 자유수강권 지원 ○선택형 방과후학교 수업계획 수립 ○방과후학교 선택형 프로그램 운영 ○자유수강권 지원금 신청 운영 ○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금 신청 운영
	<b>추진방향</b> ○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방과 후 프로그램 활성화 ○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수립 ○교육복지 지원계획 수립 및 교육복지위원회 조직 ○맞춤형 방과후 학교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(선택형 프로그램 운영) ○자유수강권 및 방과후 운영비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

### 마. 방과후복지부(안)

1) 맞춤형 학생성장 프로그램 방과후학교 실시		
관련 : 2025 전북교육계획	담당자	000 (☎070-0000-0000)

#### □ 핵 심 과 제

- 맞춤형 학생 성장 프로그램 활성화
- 소외계층 방과후학교 지원 제도 개선
- 지역사회 및 교육기부 연계 프로그램 다양화
- 방과후학교 운영 재정 지원 강화

#### □ 운 영 방 침

-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선정, 수강료 책정, 강사 선정 등의 주요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 학교장이 결정 운영
- 방과후학교는 교과관련 프로그램과 예·체능 및 방과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
-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
- 임용된 지도 강사에게 방과후학교 교육 프로그램 계획을 제출받아, 사전에 교육 내용을 점검·지도
- 국고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계 관리는 합법적인 회계처리를 하여 투명성 확립
- 방과후학교 참여자는 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기입할 수 없음(전학년 미기재)

□ 방과후학교 운영 세부 계획(예정)

- 교과관련 수준별 보충학습 교육활동은 정규 교과시간 이외의 시간에 운영 (1,2학년은 3월 ~ 익년 2월, 하며 3학년은 3월~10월까지만 운영)
- 각 반당 평일 1일 2시간, 방학 4~6시간 1학기, 하계방학, 2학기, 동계방학 4분기로 실시
- 시간당 지도수당은 38,000원으로 함.
- 저소득층 지원 사항
  - 자유수강권에 선정된 학생은 연 600,000원내로 국고에서 지원(최대 80만원 가능)
- 소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학생 부담금은 수업 분기 단위로 고지하여 징수함. (약간 변동 가능)
- 지도수당 및 운영비는 분기 단위로 정산함. (약간 변동 가능)
-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여 홍보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부모의 동의를 얻어 운영함.
- 방과후학교 운영을 마친 후 설문조사를 통해 피드백하여 다음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고함.
- 1인당 학생 부담금 산출근거  
 $(\text{주당수업시수}) \times (\text{학급수}) \times (\text{수업일수}) \times (\text{시간당지도수당}) \div (\text{참여학생수})$

방과후학교 운영계획 (변동가능)	운영 기간	1학기	3월 00일 ~	여름 방학	7월 00일 ~	2학기	8월 00일 ~	겨울 방학	1월 00일 ~
	운영 시간	주중	16시30분 ~ 18시20분	방학	8시40분 ~ 12시30분	주중	16시30분 ~ 18시20분	방학	8시40분 ~ 12시30분
수요조사 실시 계획		3월00일 ~ 3월 00일		7월00일 ~		8월00일 ~ 8월00일		12월00일 ~ 12월00일	

- ※ 토요일은 미실시
- ※ 수용비 및 운영비(강사비, 교재비)는 도교육청에서 지원(약 33,000,000원)
- ※ 교육정상화법에 따라 선행학습 금지함(방학 중에는 가능함).

- 수강료, 재료비, 교재비 환불 세부 기준

구 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(월 단위)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개시 이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
	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 해당액 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 후 (총 수강시간 50% 초과)	환불하지 아니함

□ 과목별 시수 배당표(변동가능)

학년	계열	운영반	국어	영어	수학	사탐	과탐	총단위수
			학기중					
1학년	공통	3	3	3	3	방학기간 중		9
2학년	공통	2	2	2	2	2	2	10
3학년	공통 (인문, 자연)	1	1	1	1	2	2	7
		1	1	1	1	2	2	7
총계		7	7	7	7	6	6	33

□ 학년별 지도과목 (변동가능)

과목	1학년	2학년	3학년	인원
국어	3	2	1	
영어	3	2	1	
수학	3	2	1	
사탐		2	2	
과탐		2	2	
예체능	3(음악, 미술, 체육)			

□ 기대효과

- ‘방과후학교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강화로 교육복지 실현 및 학교 밖 사교육 수요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지역간·계층간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
-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공동체의 교육 만족도 증대
-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하여 방과후학교를 구심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,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학교 실현
- 방과후학교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, 수준 높은 맞춤형 교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부모의 만족도 향상과 학력 신장

<별첨 1>

## 방과후 학교 환불규정

- 전학 · 장기입원 · 수강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한 수강료 환불은 학교 환불 규정에 의하며,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환불 시기를 정한다.

구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불금액	비고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	※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수강개시 이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액	
	총 수강시간의 1/3경과 전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/3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전 (총 수강시간의 50%까지)	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/2해당액	
	총 수강시간의 1/2경과후 (총 수강시간의 50%초과)	환불하지 아니함	

2025. 3. 4.

덕 암 고 등 학 교

<별첨2>

# 방과후학교 수강 중단(환불) 신청서

( ) 학년 ( ) 반 ( ) 번

이 름 :

전화번호 :

사 유

년 월 일

신청자 학부모 : (인)

덕 암 고 등 학 교 장 귀하

=====환불결과(학교작성)=====

수 강 기 간	환 불 내 역	비 고
. . . ~ . . . 총 수업 시수 ___회 中 ___회 수강	(원)	스쿨뱅킹 처리함

2) 균등한 교육기회를 위한 저소득층 자녀 지원		
관련: 2025 전북교육계획	담당자	000 (☎070-0000-0000)

□ 목 적
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, 교육비 지원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 보장
-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

□ 추진 내용

- 교육급여,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
  - 자유수강권, 교육정보화(PC지원) 지원자 선정
    - ▷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
    - ▷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
    - ▷ 법정차상위대상자
    - ▷ 저소득 소득기준 자녀
    - ▷ 다문화 및 다자녀, 장애인 부모 가정 자녀
    - ▷ 학교장 추천
- (2025학년도 저소득층 중·고생 자녀 학비지원 계획참조)
- 지원방법
  - 방과후자유수강권 :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의 방과후비 감면
  - 교육정보화(PC지원) :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의 통신비 지원
- 자치 단체등 기관의 저소득층 돕기 장학금 본교 유치

□ 자유수강권 신청 처리 절차

신청	접수	조사	대상자 선정
학부모	읍면동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(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)	소득재산조사 (행복e음)	학교장 결재 (NEIS)

□ 기대 효과
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간 교육격차 완화
  - 취약계층 학생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
- 자유수강권에 선정되고도 당해 방과후수업 수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년도에 자유수강권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함 (다음 차순의 학생에게 기회 제공 목적).